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3. 27 선고 2023가단5247019 판결 [진정명의회복을 위한  
소유권이전등기 청구]

---

## 재판경과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9. 5 선고 2024나20538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3. 27 선고 2023가단5247019 판결

## 전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

담당변호사 임재상

피 고 1. B

2. C

3. D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곤

변론종결 2024. 3. 6.

판결선고 2024. 3. 27.

## 주 문

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

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## 이 유

### 1. 기초 사실

별지 목록 기재 1, 2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0. 4. 14.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1. 2. 6. 망 E(이하 ‘망인’이라 한다)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, 이후 2023. 5. 4. 유증을 원인으로 그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같은 달 30일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, 망인은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2010. 2. 19.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, 2023. 5. 4. 유증을 원인으로 그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3. 6. 15.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감 제4호증의 1~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.

### 2. 주장 및 판단

#### 가. 원고의 주장

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각 부동산’이라 한다)은 원고가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

원고의 소유이므로,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#### 나. 판단

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초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(대법원 2015. 6. 23. 선고 2013다82913 판결 참조). 갑 제8호증의 1,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, 한편으로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망인이 생전에 원고와 함께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주택'이라 한다)에 거주하면서 등기권리증을 망인이 소지하고 있다가 이 사건 주택에서 나오면서 등기권리증을 미처 챙기지 못하고 두고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망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, 달리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(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의 경우 망인이 경매를 통하여 매수한 것으로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망인에게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 사실이라 가정하더라도 이는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으로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가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위 부동산은 망인의 소유라 할 것이고, 원고가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).

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.

#### 3. 결론

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동혁

별지